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1417호 2022년 10월 7일(금)

공 고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2호선) 실시계획인가 서류의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2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 4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 5

입법예고

○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공고 제2022-936호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2호선) 실시계획인가 서류의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2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7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도문동 13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2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2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속초시장(문화체육과)
   ◦ 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1-12호선	B=10m, L=199m	B=10m, L=199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06. 30.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 10. 07. ~ 2022. 10. 21.
   ◦ 장소: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1	도문동			785	26	오선* 외3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209, 140*동 100*호				
2	도문동			974	25	오선* 외3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209, 140*동 100*호				
3	도문동			575	50		국토해양부				
4	도문동	1310-2		223	44		강원도				
5	도문동			116	53		속초시 도문동 59*				
6	도문동			1,342	135		기획재정부				
7	도문동			3,749	371		속초시 도문동 89*				
8	도문동			2,285	436		속초시 만천4길 1, *동 150*호	동명새마을금고	속초시 동명동 450-105	근저당	
9	도문동			941	44		국토해양부				
10	도문동			1,905	7		속초시 미시령로3389번길 10, 10*동 100*호				
11	도문동			3,260	633		서울시 성북구 성북도 14-*				
12	도문동			2,047	30		국토해양부				
13	도문동			72,789	199		속초시				
합계				90,991	2,053						

속초시 공고 제2022-9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0. 5.

속 초 시 장

1. 처분제목: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22. 10. 5. ~ 2022. 10. 19.(15일간)
3. 공고방법: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연번	성명	위반대상(위치)	처분내용	반송주소	송달불능 사유
1	김광*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1동 401호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44, 테르바움 111동 401호	폐문부재

5. 기타사항
   - 만일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 또는 온라인(http://jb.simpan.go.kr/spi)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건축과(☎ 033-639-2456, FAX: 033-639-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속초시 공고 제 2022 - 945 호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속 초 시 장

가. 공 고 명: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나. 도로위치: 속초시 노학동 279-5, 279-6번지
(도로지정 당시: 노학동 산193-12, 산193-18번지)

다. 공고방법: 속초시공보,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2022. 10. 7. ~ 2022. 10. 22. (14일간)

마. 도로 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 통보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279-5 (도로지정 당시 : 산193-18)	도	240	240	박임○	노학동 279-3 (건축신고 당시: 노학동 산193-19) 창고시설 2000-도시과-신축신고-68 2000. 12. 26.	건축허가(신고) 당시 건축주: 박기○
	279-6 (도로지정 당시 : 산193-12)	도	88	88	유석○		

바. 공고방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사. 관계도서: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아. 문의사항: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774)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 치 도	축 척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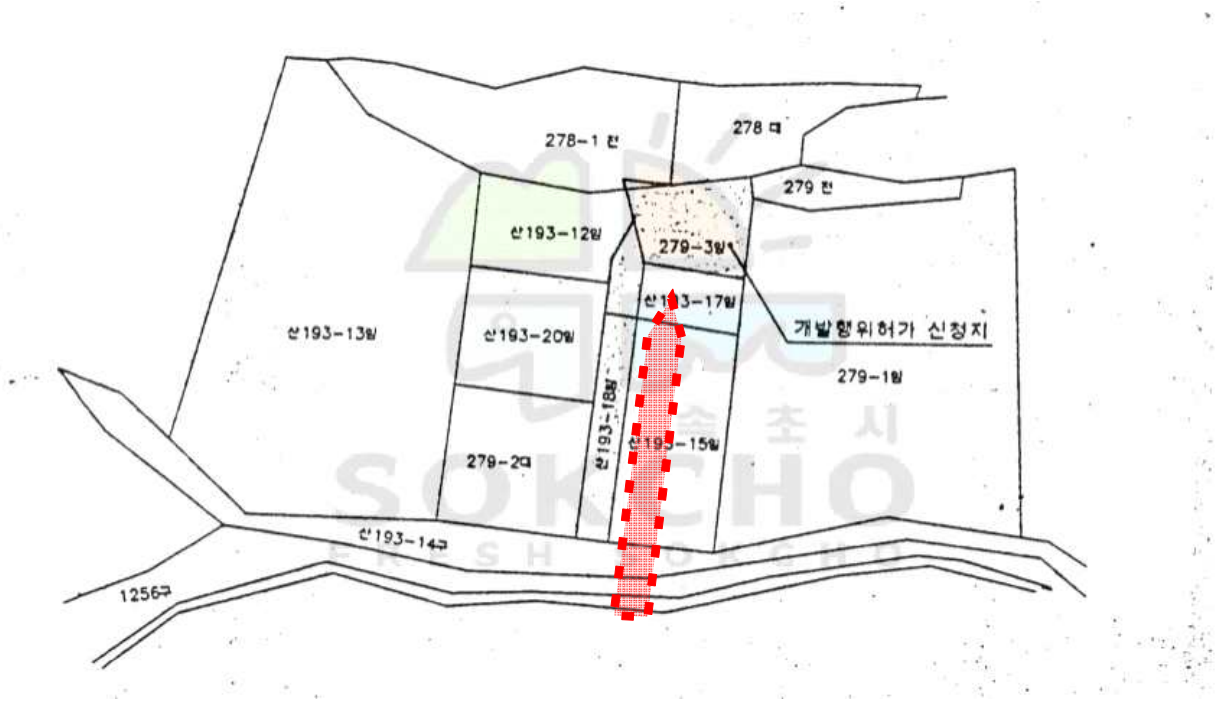

도로 지정 현황도	축 척 NONE

속초시 공고 제 2022-955 호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변경 및 인용조문의 변경과 별지서식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상의 용어 개정 사항 반영

- (현행) '결손(처분)' 용어
- (개정) '정리보류' 와 '시효완성정리' 로 구분·변경됨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시효완성정리
  - ·그 외의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리보류
  - ·현행 규정에 맞는 별지서식 정비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개 정 전	개 정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인수)서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인수)서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1)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세무과(징수팀)

2)연락처 : (전화) 033-639-2288, (팩스) 033-631-077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전화 033-639-2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2022-955호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정리보류 등)①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정리보류표(갑,을)에 따른다.

②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병)에 따른다.

제15조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의 본문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6조의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결손처분을 한”은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를 “정리보류를 취소하고”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74조의제2제5항 및 제6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갑,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병)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시효완성정리----------.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4조(정리보류 등)①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정리보류표(갑,을)에 따른다.
<신설>	②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병)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정리보류를 ----------정리보류 취소액 ----------.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

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리보류를 한----------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

속초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안 목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1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2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통지부	
3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4	수납부	
5	징수부	
9(갑)	정리보류표	
9(을)	정리보류표	
9(병)	시효완성정리표	<신설>
10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1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13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 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세입연시	년 속초시 세입		
	관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시(시·군) 구(시·군) (도로명 주소) 외 명		
적요	년 속초시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 역 서

구분 / 동	과세표준	세율	징수·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시·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담당자	담당	과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 [ ]

세입연시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 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시 : 년 속초시
결의년월 : 년 속초시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정리보류액 (시효완성정리액포함)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 월 분 까 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과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시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정 리 보 류 표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 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	연시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병**)]

시 효 완 성 정 리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 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징수관	

과세 번호	연시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 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인)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1호 및 속초시 시세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 속초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table>
<tr><td rowspan="2">체납자</td><td>성명
(법인명)</td><td></td><td>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
(영업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압류재산의 표시</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압류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 colspan="5">압류에 관계된 체납액</td></tr>
<tr><td rowspan="2">세목</td><td rowspan="2">과세연도</td><td rowspan="2">납부기한</td><td colspan="3">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td></tr>
<tr><td>계</td><td>지방세</td><td>가산금</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체납처분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합계</td><td colspan="3"></td></tr>
</table>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소 전자우편주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속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속초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